

【2016 실내건축기사 정오표】 [2016.2.11]

※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페이지	교정전	교정후	비 고
267	다중이용건축물 정의... 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·동·식물원)	①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·동·식물원)	전시장 삭제
267	신설 추가	준다중이용건축물 ⇨ 하단참조	법 신설(정의)
273	[표]속 2. 연면적: 1,000㎡	연면적 : 500㎡	법 개정(※500㎡ 주의)
277	3)배연설비	⇨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278	[표]속 최하단에 한줄 추가	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/호실간 경계벽 ⇨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295	3)배연설비	⇨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301	[표]속	⇨ 하단참조 · 준다중이용건축물	법 개정(대상 추가)
[과년도기출]	과년도기출 법규문제 중 구조안전확인 대상	연면적 1,000㎡ → 500㎡ 으로 수정	법 개정(※500㎡ 주의)

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www.inup.co.kr 실내건축기사 동영상강좌 게시판에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☞ 하단참조 내용

[건축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!!]

☞ 267p 신설 내용추가

※ 준다중이용 건축물

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건축물

☞ 277p, 295p수정부분(동일)

3) 배연설비

1.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것의 거실

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),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은 제외)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 [예외] 피난층인 경우

2.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
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,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·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

[예외] 피난층인 경우

☞ 278p 수정부분

①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

대상 건축물의 용도	구획 부분	구조 제한 기준
• 다가구주택 •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	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 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
• 학교의 교실 • 의료시설의 병실 • 숙박시설의 객실 • 기숙사의 침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
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	호실 간 칸막이벽	
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	세대 간 경계벽	
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	호실 간 경계벽	

☞ 301p 수정부분

관계전문기술자	건축물의 규모	용도 및 협력사항
건축구조기술사	• 6층 이상 건축물 • 특수구조 건축물 • 다중이용 건축물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 •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	구조안전의 확인